

##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

### 1.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4. 3. 25. 15: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 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②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의결
  - ③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
- 양형위원 개임, 임명장 수여식 개최
-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제14차 자문위원 대법원장 접견 및 자문회의 개최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 결과 보고
-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보고

### 3.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30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 4.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심의·의결

#### 가.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1) 전문위원단에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지 않기로 의견이 일치한 쟁점

- 가) 국가핵심기술의 국내침해를 소유형 2에 포함할지 여부(소극)
- 나)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소유형 5로 '예비·음모' 신설 여부(소극)

-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대유형 3)의 형량범위 하향 여부(소극)
- 라) 산업기술 침해행위(대유형 4) 중 국내침해(소유형 2)와 국외침해(소유형 3) 하향 여부(소극)
- 마)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중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의 상한 상향 여부(소극)
- 바) 특별감경인자 중 ‘내부고발’ 제외 여부(소극)
- 사)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산업기술 침해범죄 모두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의 양형인자를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할지 여부(소극)
- 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 수정 여부(소극)
- 자) 특별가중인자에서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대유형 3, 4)삭제 여부(소극)
- 차)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정의규정 수정 여부(소극)
- 카)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중 소유형2(국내침해), 소유형3(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방위산업기술’과 ‘전략기술’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여부(소극)
- 타) 영업비밀 침해행위(대유형 3)에서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에서 삭제 여부(소극)
-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삭제, 대유형 3, 4에서 제외 여부(소극)
- 하)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의 생성 및 구체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추가 여부(소극)
- 거) ‘상당한 정도의 기술(기술데이터 포함)이 유출된 경우’라는 가중인자 신설 여부(소극)
- 너) 피해 미변제를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로 수정하고 피해 미변제를 예시로 규정 여부(소극)
- 더) ‘동종 범행 재판 중 추가 범죄’ 및 ‘증거인멸행위를 한 경우’ 추가 여부(소극)
- 러) ‘영업비밀 국외침해’ 추가 여부(소극)

## 2) 심의·의결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위 쟁점에 관한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2024. 1. 18. 의결)을 유지하기로 함

## 나. 전문위원단에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기로 의견이 일치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1) 전문위원단에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기로 의견이 일치한 쟁점

가)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중 ‘누설·도용’(대유형 4, 소유형 1)을 유지할지 여부

-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으로 수정하기로 함

나) 미필적 고의를 대유형 1, 2, 3, 5 의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하고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로 규정 여부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위 경우에 추가하기로 함

## 2) 심의·의결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양형기준안(2024. 1. 18. 의결)을 변경하기로 함

## 다. 양형기준 시행 시기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일은 2024. 7. 1.로 정하여, 2024.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

## 5.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심의·의결

### 가.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1) 전문위원단에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지 않기로 의견이 일치한 쟁점

가)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전자장치 효용무효) 범죄 양형기준 추가 여부(소극)

나) 일반 스토킹범죄 감경, 기본, 가중영역 상향 조정 및 감경, 가중영역 벌금형 하한 조정 여부(소극)

다) 흥기등휴대 스토킹범죄 감경, 기본, 가중영역 상향 조정, 감경영역 벌금형 상한 조정 및 기본, 가중영역 하향 조정 여부(소극)

라) ‘처벌불원’을 벌금형 선택기준에서 제외, 잠정조치 위반 가중영역의 선택기준에서 제외 여부(소극)

마) 스토킹범죄 전체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여부(소극)

바) 정의규정 중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제외 여부(소극)

사) ‘미필적 고의’ 특별감경인자 삭제 또는 수정 여부(소극)

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정의 규정의 수정 여부(소극)

자)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회복’ 특별감경인자 수정 여부(소극)

차)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감경인자 수정 여부(소극)

카)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또는 정의규정 보완 여부(소극)

- 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수정 여부(소극)
- 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가중인자 제외 여부(소극)
- 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정의규정 추가 여부(소극)
- 거) ‘진지한 반성’ 일반감경인자 제외 여부(소극)
- 너) ‘심신미약’ 일반감경인자 제외 여부(소극)
- 더) ‘상당한 피해 회복’ 정의규정 제한 및 공탁 포함 문구 삭제 부적절 여부(소극)
- 러)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여부(소극)
- 머)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가중인자로 추가 여부(소극)
- 버)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가중인자 추가 여부(소극)
- 서)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참작사유 제외 여부(소극)
- 어)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잠정조치 등 위반)’ 내용 수정 여부(소극)

## 2) 심의·의결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현행 양형기준안(2024. 1. 18. 의결)을 유지하기로 함

## 나. 전문위원단에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기로 의견이 일치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1) 전문위원단에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기로 의견이 일치한 쟁점

- 가) 동종 전과 범위 확대 및 정의규정 수정, 동일 피해자 이외 전과의 범위 제한 여부
  - ‘(대유형1, 2)’ 및 ‘약취·유인범죄’를 추가하기로 함
- 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정의규정 수정 여부
  -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함

범행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2) 심의·의결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 및 양형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양형기준안(2024. 1. 18. 의결)을 변경하기로 함

## 다.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1) 동종 전과 중 동일 피해자 대상 범죄에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및 ‘손괴죄’를 추가할 지 여부
  -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기로 함
  - 포함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라. 양형기준 시행 시기

- 스토킹 양형기준 시행일은 2024. 7. 1.로 정하여, 2024.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

## 6.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심의·의결

### 가.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1) 전문위원단에서 양형기준안을 변경하지 않기로 의견이 일치한 쟁점

- 가)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별도 분류 불요 여부(소극)
- 나) 대마수출입 등 범죄의 유형 재분류 불요 여부(소극)
- 다) 투약·단순소지 등 일괄 상향 재고 여부(소극)
- 라)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에서 소유형 3,4의 양형기준 하한 재검토 여부(소극)
- 마) 특별감경인자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제외 등 여부(소극)
- 바) ‘내부고발’ 추가 여부(소극)
- 사)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의 대량범 기준가액 외 별도의 기준설정 여부 등(소극)
- 아) 상습범에 대한 구체적 명시 여부(소극)
- 자) 일반감경인자 중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기준 수정 여부(소극)

#### 2) 심의·의결 내용

- 전문위원단 의견대로, 위 쟁점에 관한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2024. 1. 18. 의결)을 유지하기로 함

### 나.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1)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대유형2, 중유형 나)에서 일반가중인자로 ‘인

- 적 신뢰관계 이용'을 추가할지 여부
- 일반가중인자에 추가하기로 의결함
- 추가하지 말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다. 양형기준 시행 시기

-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일은 2024. 7. 1.로 정하여, 2024.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

### 7. 향후 일정

#### 가. 제13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 ▣ 일시 : 2024. 4. 29.(월) 오후
- ▣ 안건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전자  
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